



[EAI 워크숍] ADRN National Level Workshop

한국 민주주의 스토리텔링 전문가 토론회: 한반도 이행기 정의와 세계 민주주의

동아시아연구원(EAI)

한국민주주의 스토리텔링 전문가 토론회: 한반도 이행기 정의와 세계 민주주의

- “이행기 정의와 국가책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 국제관습법의 형성과 국가실행 중심으로”에 관한 발표와 토론으로 비공개 온라인회의가 진행됨. 김현준 고려대 교수의 사회, 백범석 고려대 교수의 발표, 서지원 창원대 교수, 이병재 연세대 교수, 이숙종 EAI 시니어 펠로우 (성균관대 교수), 이영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대표, 이해원 숭명여대 교수, 조정현 한국외대 교수, 천자현 연세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음.

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행기 정의

국제관습법

- 국제법에서 국제관습법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1항에서 규정할 만큼 조약과 함께 주요한 요소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이 중요성은 다같이 세가지 특징점이 있음. 1)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폭발적으로 국제조약들의 증가하면 국제관습법은 국가책임, 관할권, 주권면제, 무력사용, 조약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함. 2) 많은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 가능한 규범으로 수용함. 한국의 형법 제6조 1항을 보면 국내 형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 국제법학자들은 공이, 관습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3) 90년대 냉전 이후 국제재판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적극적으로 국제관습법을 인용하거나 확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관습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것이 관습법을 결정하는 요소들인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 됨.



UN 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의 작업

- UN국제법위원회 ILC에서는 국제관습법의 결정이라는 제목하의 최종적으로 16개의 결론으로 구성된 초안을 채택하고, 2018년 UN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작업을 종결하였음. 몇 가지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결론2에서는 국제관습법의 존재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음. 다음으로 결론5에서는 국가실행은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또는 여타 기능의 행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규정함. 다만 국가행위 상호간에는 미리 결정된 서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한편 법적 확신의 경우, 국가실행의 법적권리, 또는 의무라는 의식을 갖고 행해져야 한다고 보았음. 특히 국가부작위의 경우 법적확신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만함. 국제법위원회는 국제기구의 결의와 국내법원의 판결이 국제관습법 형성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 각각 결론10, 그리고 결론13에서 규정하고 있음. 해당 작업이 ILC를 통해 진행되면서 일반적인 국가관행, 즉, 대표성의 문제로 수렴되었음. 일반적인 관행은 특정 국가의 국가실행이 반영되었을 뿐,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실행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임. 특정 국가들의 실행과 해당 국가 법학자들의 저작물들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매우 비민주적인 국제법 형성에 구조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 이론상으로 국제관습법의 형성은 모든 국가의 일반적인 관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국가의 행위만 반영하게 됨. 모든 국가가 평등하는 주권평등 원칙에서도, 국제관습법을 형성하는 룰메이커와 대다수의 규범 수용자의 역할만 맡게 됨. 일부 국제법 학자들은 전통적인 국제관습법과 현대 국제관습법에 차이를 두고 후자에 더 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오늘날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 국제환경법이 추구해가는 발전 방향에 국제관습법에 반하는 형태로, 또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데 악용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국가실행이 없더라도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봄. 입법기관이 없는 국제법의 특성과 본질을 고려할 때,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법적안정성을 강조하는 전통국제법의 시각에서는 현대 국제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봄.
- 국제관습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이론을 국제공법상 국가책임 법리에 투영시켜보고자 함. 국제법상 국제위법행위와 이러한 행위에 귀속되는 국가는 국가책임을 부담하게 됨. 타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현국제공법 체제하에서 피해자가 가해국을 상대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은 국제법상 매우 제한적임. 국가책임 초안에 관한 ILC 주석을 보아도 국가책임의 추궁 주체로 유일하게 국가만을 다루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자신의 타국을 향한 구제수단이 국제법상 극히 제한적임. 따라서 타국에게 피해를 받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제책으로서 자국민을 대표해서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외교적 보호권은 국제법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외교적 보호 목적이 국제 위법 행위로부터 피해 국민을 보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도 국적국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다는 견해는 변함이 없음. 실례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연합국은 일괄 타결 방식을 통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했고, 65년 채택된 한일 청구권 협정 역시 마찬가지임. 문제는 일괄 타결 방식을 채택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이지만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은 개인의 권리라는 점임.

전통적인 국제관습법(traditional CIL)과 현대 국제관습법(modern CIL)

- 국제법위원회는 2006년 작업을 종료한 외교적 보호 초안을 통해 이러한 모순을 해소할 기회가 있었음. 첫 번째 초안에서는 강행 규범 위반의 경우에는 국적국이 자국민을 대표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였지만 더 많은 국가 관행 그리고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는 당시 대다수 의원들의 견해에 따라서 이 조문안은 철회되었음. 한편 흥미롭게도 외교적 보호 초안 19조를 보면 권고적 실행이라는 다소 특이한 표제 하에 가능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개인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외교적 보호회 행사와 대상이 무엇인지 국가는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물론 국제법 위원회는 주석을 통해 해당 조항이 국제 관습법의 지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 하면서 국가 교육 보전에 해당 사항이라고 적시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소송과 관련한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서 해당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바 있음. 그리고 해당 조문을 기초로 하여 분쟁 해결 절차로 나아갈 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임. 다시 정리하자면 현 국제법 체제는 국가 책임 추궁 주체로서 개인을 다루지 않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원할 때 그리고 국가가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권리라는 것은 현대 국제법과 동떨어진 것임. 2005년 UN 총회가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국제 인도보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관한 권리의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 첫째, 전통국제법상 핵심인 국제관습법의 형성과 발전 과정 자체가 특정 국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 다시 말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 보편적이어야 할 국제법 체제가 실제로는 국제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자리잡아왔다는 것임. 둘째, 국가 책임에 관한 국제 규명 특히 타국으로부터 심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적 보호권은 여전히 국가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음. 문제는 여전히 국가 중심의 전통적인 국제법 체제가 사실은 국가 중심이라고 쓰지만 결국 특정 국가 중심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는 점임. 물론 국제 인권법에서 개인을 주체로 하는 여러 논의들이 TJ(Transitional Justice, 이행기 정의)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이 역시도 선택적이고 한정된 영역에서만 인정되어 왔음.



-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가고 있는 국제 규범들을 해석하거나 반영함에 있어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개별 국가의 국가 실行的 부득이 측정 상황에서는 국제법 해석의 적용에 관한 불일치나 충돌 문제를 종종 야기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국제법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격을 고려한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음.

국가책임과 주권면제

- 일본 정부를 상대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이 논의를 적용해볼 필요가 있음. 일본군 위안부 소송은 같은 사안으로 두 건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1) 올해 1 월 8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3 민사부가 선고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통해 종결되었고, 2) 다른 하나는 4 월 21 일 제 15 민사부에서 각하 판결을 통해 종결되었음. 양 사건에서 가장 우선시되어 다루어진 핵심 쟁점이자 판결을 정반대로 가는 주된 사안이 바로 재판권의 유무, 즉 주권면제에 관한 것이었음.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인 주권 면제를 내세워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임. 여기서 주권면제란 일국은 타국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행해야 한다는 것임.
- 웨스트팔리아 조약 체결 이후 근대 주권 국가가 탄생하면서 주권 면제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주로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주권자, 즉 군주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서 기인하였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권자의 인격이 국가 기관의 인격으로 전환되고 주권면제 원칙은 외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법적 실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법원에서 외국, 그리고 그 외국의 국가 자산을 법정지국의 재판권 및 강제 집행으로부터 면제한다는 국가 면제라는 개념과 호명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음.
- 이러한 주권 면제로는 앞서 살펴본 각국의 시행을 통해 확립된 국제관습법상의 법리임은 분명함. 그러나 주권 면제론을 적용해 온 다수의 국가 실행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절대적 주권 면제로는 19 세기 말부터 제한적 주권 변쟁으로 점차 변화되어 왔음. 국가 차원의 사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자연이 이러한 상인회와 관련된 일국 정부가 타국 법원에 제소되는 현상도 많아졌음. 그 결과 국가가 단순히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활동했을 때에도 주권 면제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결국 그 이유는 절대적 주권 면제를 향유한다고 한다면 외국과 거래하는 사이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임. 이러한 불리한 입장을 시정하고 자국민에게 한적 주권 면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점차 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대다수 국가에서 제한적 주권면제론에 입각한 국가 실행을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주권 면제론은 국가 관할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이론으로 국제법상 확고한 불면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국가 실행을 통해 발전 및 변화해 왔음. 그런데 국제 인권법이 본격적으로 발전해 오고 피해자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보장되고 특히 TJ와 관련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조되어 오면서 상행위에 대한 예외를 넘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침해에 대해서는 주권면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9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국가 중심의 전통 국제법의 정태적 모습이 아닌 현대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방향을 고려하였다고 보여짐. 주권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적어도 피해자가 주권 면제를 인정하게 되면 과연 대체적인 구제수단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 국제인권법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증대되는 규범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국가를 향하여 개인이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실현하도록 한 현대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반영한 것임. 물론 주권 평등의 원칙과 국제 분쟁 회피라는 목적 하에 관할권 면제가 국제관습법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늘날 인권 침해를 이유로 강행 규범 위반에 대한 주권 면제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기도 함. 하지만 주권 면제 적용에 관한 상반된 재판 사례나 국가 실행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해당 원칙에 관한 기존의 국제 관습법이 아직도 불완전하고 불안정하다고 볼 수도 있음. 이와 같이 주권면제론에 대한 각국의 실행을 보면 국제 인권법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들과 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국제법상 실제법과 절차법의 적용 영역이 각각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한적 주권 면제론의 실행이 국제인권법의 발달과 국제인권법의 인권 중심적 변화 가운데서 언제까지나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임. 개별 국가의 실행은 부득이 특정 상황에서 법 해석의 국제법 해석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 불일치나 충돌이 종종 야기되고 이는 국제법이 가지는 기본적 법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이기도 함. 주권 면제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개별 국가의 국내 입법과 법원 판결을 통해 변화해 왔고, 때로는 고립된 한 국가의 국내 법원 판결을 통해 점차 국제사회의 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임.

오늘날의 국제관습법과 인권

- 오늘날 국제인권법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인도적, 도의적 그리고 정치적 고려의 판단이 아닌 국제 인권적 시각에 기반을 둔 법적 구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시에 국가를 향해 이를 보장할 의무를 천명하고 있음. 적어도 심각한 인권 피해 침해자로부터 구제를 막고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만큼은 피해자의 사업에 접근할 권리 또는 자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통해 구제를 받을 권리는 오늘날 국제관습법으로 확인되고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이와 같이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가 확립된 국제관습법으로 존재한다면 기존의 불완전한 주권 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은 그 적용에 있어 예외를 인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됨.



- 올해 상반된 결정을 한 1월과 4월을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주권 면제 법리 적용 여부에 관한 논의는 결국 대한민국에서의 국제인권법의 이행과 적용도 국제법의 발전과 변화, 특히 국제 관습법의 형성을 둘러싼 비판적인 시각과 국가 중심 특히 특정 국가 중심의 국제 공법이 가지는 한계 및 개인의 권리 특히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고자 하는 현대 국제법의 치열한 논의에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이행기 정의

인도네시아의 이행기 정의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2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반다지에서 현지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음. 피해자 네트워크, 인권운동가,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등을 인터뷰를 했고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 도서관, 국회도서관 여러 도서관들을 돌면서 문헌조사를 하였음. 2014년, 17년, 19년에 다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이행기 정의 관련 상황을 업데이트를 주로 2010년부터 교류해 온 인권 운동가들을 팔로업(follow-up) 인터뷰를 했음.
- 인도네시아 이행기 정의 자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필요함. 1998년에 30년이 넘었던 수아르투 정권이 무너지고 1999 동치원으로 주민투표에서 유혈 사태가 있었음. 2000년에 인권법정법, 2004년에 진실화해위원회, 두 가지 포괄적인 제도가 입법화가 됐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설립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그 이후에 다시 만들지 않았음. 현 메커니즘은 인권법정으로 2000년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의회 재가를 받아야 했고, RCC 모델로 만들어져 복잡하게 세워졌음. 검찰도 별로 협조적이지 않아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법정 예비보고서를 만드는 일만 진행중임. 2010년에 있었을 때가 아까 보상 논의가 본격화되던 시기였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인해 보상 논의가 본격화되던 시기였고, 신사지 있던 NGO에서 한국의 배상 보상에 대해 정리를 하였으나, 실제로 정책 결정에 사용이 되지 않았음.
- 한국 모델의 한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배상중심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 억원에 달하는 배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고문 같이 증명하기 어려운 중대 인권침해범죄들이 더욱더 보상액수 책정을 어렵게 함. 또 피해자 그룹에 따라서 다른 특별법들이 적용이 되고 정부기관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 모델을 정리된 형태로 내밀기가 어려웠고 지금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 10년 전에는 인도네시아는 국제인권법, 규범 등은 굉장히 빨리 수입했던 데 비해서 기념공원이나 기념군이 거의 없었음. 인도네시아 서쪽에 슬라이드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적고 자치주로 탈바꿈했던 지역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 기억의 정치가 비교적 활발한 편임.



-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세대가 다름. 한국의 이행기 정의는 1980년대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때는 제3의 물결, TJ모델이라는 것이 거의 논의가 되지 못한 상태였고, 2차대전이라든지 그리스에 대해서 참조가 있었고, 국회 5공특위를 보면 인권, 부패, 쿠데타를 섞어서 다룸. 인도네시아는 또 그에 비해서 인권, 규범, 모델 등을 많이 수입을 했었고 시기적으로 늦어서 진실화해와 같은 커다란 틀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음.

한국의 이행기 정의의 특징과 함의

- 한국의 특징은 피해자 그룹들이 주도적으로 캠페인을 했다는 것, 하지만 서로 공조는 잘 안 됐다는 것, 그래서 많은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임. 피해자 그룹 중심이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음. 기념물을 공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다는 것, 특히 기념물을 공적으로 많이 투자하였음. 만약 수출을 뭐가 한다면 한국전쟁이나 유해발굴과 같은 것을 패키지화해서 협력 모델로 만들 수도 있을 듯함.
- 한국의 5.18 사례는 조금 특이한 지점이 두 가지가 있음. 1) 한국은 이행기 정의 경험을 다양하게 갖고 있음에도 사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래서 식민지 시대의 이행기, 한국전쟁 전후의 이행기, 권위주의에서 민주화 과정의 이행기, 그리고 진실위원회만 해도 최소 14번 정도 이루어졌었고 5.18의 현재 이행기 정의 문헌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모든 그 조치를 실행을 하였고 형사 재판까지 갔던 사례임. TJ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보면 1970년에서 2007년 사이 이행기 정의를 시행한 나라들 중에 28.6% 국가만이 재판까지 가는 그런 조치를 시행을 했음.
- 그래서 5.18의 경우는 재판까지 이루어졌던 흔치 않은 사례라고 볼 수음. 많은 나라들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보통 진실과화해위원회나 아니면 배상 정도로 마무리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군부로부터의 반발 저항, 그리고 정치적 개입을 하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재판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됨. 한국 5.18은 다양한 조치들이 있었는데 연구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고 그리고 재판까지 갔었음에도 군부로부터의 가시적인 저항이나 반발 그리고 다시 군부가 등장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 두 번째로, 기존에 많은 학자들이 이행기 정의 연구를 하면서 트랜지션 타입이나 이전 정권 얼마나 민주주의 이행 이후에 강력하게 남아 있는지를 중요하게 봤음. 구 엘리트들이 2년 이후에도 강한 정치 세력으로 남아 있으면 있을수록 강력한 이행기 정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웠음. 한국의 경우는 군부 엘리트 세력의 핵심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타협에 의한 민주화(pacted democratization)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기 조치들이 이루어졌던 5.18은 독특한 사례임.
- 이행기 정의 조치를 시행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군부의 반발, 저항으로 인해 현재보다 상황이 악화되고 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음.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도 과거 세 번의 군부 반란은 모두 기소에 대한 때문에 일어났던 경우였고, 실제 다른 나라에서 군부의 컴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의 저항과 반발의 실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평가가 필요한 부분임.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해당 군부 엘리트들을 기소하기 전에 이런 군부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미리 취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한국에서는 군부의 반발(backlash)가 없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함. 학자분들의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게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두 번의 쿠데타를 비롯해, 소수의 하나회, 군대 전체로 거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어떤 정치화된 군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쿠데타였기 때문에 군대 전체 그룹으로 보면 인스티튜션으로서(institution)의 군대는 그렇게 정치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많은 학자들이 꼽음. 재판을 통해서 극소수의 정치화된 군인을 제거함으로써 인스티튜션으로서의 군대와 선을 그을 수 있었던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또 5.18 관련해서 군부의 정치화된 군인들에 대한 제거 하나의 숙청 작업과 재판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반발을 최소화한 이유 중에 하나임. 군부가 일반 대중의 반감을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도 이유임. 비(非)하나회의 멤버로서 승진 특권에서 배제되었던 내부 많은 세력들이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환영하는 군대 내부의 분위기도 있었음. 이행기 정의 조치를 고려하는 나라들은 해당 국가의 군부의 특성을 고려해서 백래시의 위험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한 국가의 이행기 정의를 가능 혹은 불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정치 지도자 혹은 피해자 유가족 중심의 강력한 활동 전략 의지가 필요함. 이행기 정의 과정 자체가 길고 지난하고 정치적인 과정이라서 정권교체가 있을 때마다 부침을 겪기도 함.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결국은 일반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함. 그래서 한국은 이행기 정의 조치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은 것들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반발이 없이 이루어진 뒷배경에는 대중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옴

한국의 국제적인 정책 수립방향

국내 인권정책의 모호한 방향성

- 강의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권적 공헌을 무엇을 했는지 생각이 들었음.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것이 조금 자리 잡은 거는 국내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인 것 같음. 당시 인권위원회도 만들었지만 인권외교 차원에서 보자면은 미얀마 아웅산 수치 관련해서 인권 관련 결의안도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기여를 최초로 했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인권 외교라는 게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홍콩에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언급되고 관련 가요도 부르는데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우리 정부는 상당히 자제를 하는 경향이 있음. 반면 미얀마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아주 비슷한 시기에 몇 달 차이로 했는데 극명하게 갈린 모습을 점을 보면서 현실 정치에서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확실히 느꼈음.
- 일본과 비교를 해봐도 최소한 원칙을 세우고 노력하는 모습이 현 시점에서 잘 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아쉬움. 더 다듬고 유기적이고 전략적인 생각으로 정책을 수립을 해서 잘 실천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소재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듦.
- 북한 인권 관련해서도 보수 진보의 갈등을 차치하고 현 정부 최근 들어서 오히려 UN에서 북한 인권 관련된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가 문제 제기가 여러 건에서 되고 있는 게 사실 매우 서글픈 심정임. 탈북자 문제로 박사 논문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복송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큰 자괴감을 느꼈음.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도 국내인권법적으로 고문방지 등을 고려해서 아무리 해석을 해보라고 해도 저 우리 정부 입장이 잘 이해가지 않음. 정책적으로 왜 그런 결정을 NSC에서 했는지는 이해는 가지만, 최소한 정부라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기존에 있는 실정법들을 지켜야 되는건데 제 지식으로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서 매우 실망함. 중도도 있고,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표면상 대표적인 경향은 분열되고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소재로서만 언급이 되어 안타까운 마음임.
- 대북전단금지법도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고 3년 징역형까지 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 아닌가 하는 비판들이 있음.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도 역사 왜곡 처벌법이 최고 5년 징역형인데 인권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이 많음. 광주라는 특수성 때문에 강하게 얘기를 못하지만 사실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음. 자유권 규약 위반이고 위헌소지가 상당히 높음. UN 인권레짐 차원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음.
- 이 문제를 이행기정의 차원에서 보면 응보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대량 인권침해라는 - 하나하나 개별 사건으로 다 처리를 할 수 없는 - 대량적인 사건, 특히 과거사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회복적 정의도 균형 잡히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도 느낌. 과거와 미래를 함께 고민을 하고 정의 실현과 사회 통합을 고민해야 함. 또 국민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된 상태에서 국민적인 합의의 토대 위해서 그 두 가지를 다 균형 잡게 추구하는 게 이행기정의 논의에 가장 중요한 큰 그림이라고 봄.
- 보편적인 원칙을 잘 정리를 하고 민주주의든 인권이든, TJ인권이든 그 안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균형잡힌 원칙을 가지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그런 차원에서 이행기정의를 성공사례나 혹은 실패사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해외에 또 교훈이나 시사점을 전파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것 같음. 현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많이 기여하는 데 SDG를 보면 16번에 평화와 정의, 또 기관 개혁과 TJ의 메커니즘도 중요하게 다룸. 이 분야도 한국이 충분히 국제사회에 기여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기반의 이행기 정의

이행기 정의 데이터와 성과 평가

- 이행기정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고민이 필요함. 의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성과 측정치가 있는데 트랜지셔널 저스티스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내지는 인권신장을 결과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신장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측정을 할 수밖에 없음. 그런데 이 모델은 법학에서 말하는 처벌하고 다름. 특정 범죄를 기준으로 처벌을 강화했을 때 계속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는지 혹은 줄어드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 반면에 이행기정의의 모델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민주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게 됨. 그러나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 이행 이전에 발생한 일들임. 앞으로 조치들이 향후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일반적인 것과는 다름.
- 측정의 모호성은 사법처리, 진실화위원회, 정화, 복권, 재산권 회복 등을 사용하여 해결하려 했음. TJ 데이터베이스도 어떤 나라에서 정책을 도입을 했으면 1로 코딩을 하고, 하지 않았으면 0으로 하였음. 그러나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의 모델처럼, 예를 들어 100명 정도를 숙청했다면 그것이 더 강한 처벌이었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데이터상의 문제들이 발생함.
- 한국의 경우에 적용을 해서 본다면 트랜지셔널 저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한국은 트랜지셔널 저스티스에 있어서는 모범 사례에 해당됨. 1과 0으로 코딩을 하면 많은 조치를 한 나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테틱 컨트롤(synthetic control)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함. 이 신테틱 컨트롤은 어떤 한 국가에서 만약에 담배값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올리지 않은 곳의 인권이나 흡연율 두 개를 비교하게 됨.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경험적 연구에서는 특이 사례로서 활용 가능할 수 있음.
- 최근 민주주의 연구하고 비추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도 국가 수준에서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국가 수준에서 행정부가 바뀌는가, 인권이 어떻게 되는지가 일반적 주제임. 그러나 로컬 수준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냐는 논의가 있음. 예를 들면 시카고대학교의 모니카



날레파(Nalepa)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후에 로컬 수준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예전에 이 디스플레이스드(displaced) 된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왔는지 퍼센티지로 측정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 적이 있음.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 국가의 이행기 정의

독일과 나미비아의 사례연구

- 과거 제국주의 국가 그리고 식민주의 국가 간에 과거사 청산을 위한 협의체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미진함. 한국은 1945년에, 아프리카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 관계를 봤을 때는 1990년대 기점으로 사실상 다 독립이 됐고 문서상으로는 해결이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 관련한 이행기 정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021년 6월 초에 독일과 나미비아 간의 협약임.
- 피해국이 불리해지는 인권에 대한 보상과 제국주의 불법성 여부, 또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가 벌어진 경우가 있음. 독일과 나미비아의 경우는 제노사이드(genocide)가 있었기 때문에 이행기 정의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하는지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당면해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나미비아와 독일, 혹은 유럽과 아프리카 이야기임. 두 국가가 2015년부터 보상 합의를 시작을 했음. 지난 6월, 두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합의를 하고 한국의 위안부 합의처럼 최종적이라고 발표를 했음. 독일 외무부 공식적으로 제노사이드로 인정을 하지 않았음.
- 가장 중요한 점은 이후에 더 이상 법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화해라고 생각을 하면 비교적 양측이 만족하는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프로세스가 다 충족이 돼야 함. 하나는 일괄 프로세스, 두 번째는 사과를 포함하는 모럴.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역사 교과서는 어떻게 쓸 것이고 하는 내러티브(narrative)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풀리티컬 프로세스인데 이는 국내문제로 인한 사회분열과 관련이 있음. 진영갈등, 전선갈등 등으로 인한 분열들에 의해서 화해가 더디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음.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서 그 합의에 이르는 담론이 필요함. 한일 관계가 놓고 봐도 한국의 경우는 어떤 성향 정부가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친일 혹은 토착왜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일본의 경우는 보수 정권일 경우에 국내 청중용으로 오히려 반-화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함.
- 그 당시 피해자의 80% 이상이 헤레로 부족이었으나 현재의 최대 부족은 다른 부족이었음. 즉, 헤레로 부족은 야당에 가까운 상황임. 독일과 합의가 되면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혜택이 결국은 현재 최대 부족이 나마



부족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됨. 과거 한국과 유사하게 정부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해서 배상금 협의를 마무리지었다는 비판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음. 또 나미비아 내에서 큰 분열이 생겨 독일과 협상을 하는데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었음. 독일이 지원금을 주고 사과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헤레로족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논란이 있음. 합의가 없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외교적인 협상에 있어서도 분리할 수 밖에 없고, 이행기 정의에 있어서도 그 절차를 제대로 흡수하기가 어려움.

북한의 이행기 정의

북한인권과 COI 보고서 채택

- 이행기 정의를 북한 문제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는데 2014년 COI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음. 해당 보고서의 이행기 정의 언급은 사실 반 페이지 분량밖에 안 됨. 약 340여 페이지의 보고서에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이행기 정의가 언급됨. 북한인권 문제를 문제제기가 되고 20여 년이 지나서 수많은 결의안 보고안과 문서가 생산됐지만 결국 2014년 COI 보고서의 이행기정의라는 이 TJ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못이 박혔다는 것임. UN에서 결의안 만들고 투표 통과시키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강제력이나 효력 없는 결의안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지치고 포기하게 된 상황이 있었음. 그런 동력이 소모된 상황에서 2014년에 COI가 만들어졌음. COI가 만들어졌을 때 커뮤니티에서 환호했음. 미안마 로힝야 그룹을 비롯한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다른 나라들도 COI를 만들 수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았음. 즉, 다른 나라들에 주는 영감이 컸었음.
- ICC회부도 언급이 되었으나 ICC 회부를 못하더라도 진상조사, 책임규명, 근절, 피해구제 등을 상식 의지화하기 위한 의도와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담겼음. COI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초안 단계에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도 저희는 내막을 알고 있었는데 초안을 받아보고 COI보고서 최종 결과물에 tj가 들어갈 수밖에 없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탈북민과 납북자를 300여 명 정도의 큰 규모로 조사하고 서울, 뉴욕, 일본 등에서 인터뷰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조사 및 기록 작업이 이미 착수가 된 단계였음.
- COI보고서를 내고 난을 때에는 현장사무소라를 설립하였는데 현장사무소는 국내적 맥락에서 말하는 진상규명위원회 혹은 진실위원회를 UN이 세팅을 해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음. 각국에서 정치적 합의로 만든 진실위원회 형태가 아닌, UN 결의문에 근거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는 진실위원회의 형태로 볼 수 있음. 반인도적 범죄이고 불처벌 근절과 책임규명을 강조했다. COI보고서 발간 이후에 바톤을 넘겨받았던 게



책임규명 독립 전문가그룹들임. COI의 주요한 구성원들이 다시 위원직을 넘겨받아 책임규명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할 것인지, ICC 말고 다른 책을 찾아보기 위해 시작되었음. 한시적인 조기전회가 끝나자마자 책임규명팀이 지금 더 크게 만들어 졌음. 현재 제네바에 있는 법률 전문가 팀과 서울에 있는 팀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 법적으로 어떻게 북한을 책임을 묻고 북한의 지휘책임자들을 식별을 하고 법정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의 논리적 케이스를 케이스 빌딩을 하고 있음.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작업은 이미 개시된 작업임.

- 20년에서 25년 동안에 UN캠페인 또는 의제화 작업과 COI가 만들어진 후 패러다임이 바뀌었음. 범죄조사, 증거수집, 증명의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들 위주의 탈북민 증언 청문회가 아닌 체계적이고 방법론적으로 엄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작업들이 필요했음. UN은 UN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더 구조화돼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음. 이행기 정의 정리를 할 때 첫 번째 조사 다큐멘테이션 그룹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음. 다큐멘테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은 최소한 3년 4년 정도 간이 소요됨.
- 통일연구의 담론에 갇혀버린 현상도 비판적이었음. 독일, 예멘, 베트남처럼 지극히 제한된 트랜지션이 일어난 나라들로 연구를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음. 100여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시행착오나 제도적 실험들이 있었는데 게으른 연구를 하게 되는 구조를 통일 때문에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었음.

북한의 이행기 정의 기록 과정

- TJ의 시나리오의 변수는 무한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조사와 기록작업을 시작했음. 첫 번째 착수한 프로젝트가 동반 지리 정보 매핑 작업임. 실종, 처형, 행방불명자의 시신들을 유해발굴 작업을 하고 발굴할 위치를 찾고, 국제 도네이션을 낭비하지 않고 사법부나 검사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지역에서 유해들의 신원감식을 진행하고, 북한지역 주민들의 DNA 샘플링을 전개해서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자동화 매칭 작업으로 식별해서 진짜 피해자라고 판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누구인지, 또 우선적으로 피해배상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즉 조사에 있어서 과학을 제외하고 정치나 사회학, 역사학적 어프로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판별이나 식별할 수 있는 거세된 접근들이 다른 나라에서 많이 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매핑(mapping) 작업을 해야하는데 북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임. 하지만 한국에 와 있는 약 3만 탈북민들 북한에서 벌어진 처형과 과정 등을 잘 알고 있음. 극도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사회다 보니 이 사람들의 위치의 매핑의 기업 복원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됨. 그래서 위성 사진을 놓고 탈북민들과 같이 위치 지도를 표시를 했음. 경찰 또는



정보기관, 군 기관들이 위치해 있는 단위들을 각 마을 단위 어디까지 있는지 위치 표시를 해 놓았음.

- 이것이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빌딩이 되었냐면 여기에는 온갖 학제간 협력이 다 들어가 있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GIS 매핑, 오픈소스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분석과 통계 다 들어감. 처음에 단체를 만들 때 새로운 조사 기록 방법을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로 조사 모델링과 같이 다른 나라들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임. 로힝야, 방글라데시, 필리핀과 같은 나라에서 접근이 어려웠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더 접근이 어려워짐. 그래서 리모트 센싱이라는 조사기법을 발전시켜야지 다른 나라들의 문제들에도 대입하게 되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음.
- 두 가지 조사들이 더 있는데 탈북민들이 같이 매핑 작업을 하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의견설문조사도 함. 나중에 북한의 진상조사 또는 가해자들 기소, 아니면 법정에서 처벌, 아니면 사면, 법정을 구성을 할 때 위치는 어디였으면 좋겠고 국내가 좋은지 헤이그 같은 외국이 나은지, 재판관들은 한국인이 맡는가, 외국인과 섞어야 하는가, 외국인들을 믿을 수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들로 구성됨. 그리고 용서의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도 확인함. 법치에 대한 신뢰가 북한에서는 없었지만 한국을 겪으면서 법치 또는 제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까지도 테스트를 해 봐야 함.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들의 나중에 의사를 대변할 수는 없음. 그럼에도 의도는 설문지를 여러 차례 수정을 하면서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북한이 이행기가 왔을 때 북한 주민 전체 의견 조사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음.
- 세 번째가 북한 내부에 있는 그 피해자들의 어떤 이행기적인 구제 절차임. 인권범죄에서 빈번하게 등장한 게 납치범죄 유형이고 가장 중요한 케이스로 다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경우임. 피해자 가족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실랭카에도 수백 개의 납북, 납치 피해 커뮤니티, 실종자 커뮤니티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았음. 그러나 이 단체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 데이터 수집을 하지 않고, 서로 불신하고 경쟁을 함. 정부가 그룹 하나를 선별해 지지를 하게 되면 분란이 일어나고 흩어지게 되는 과정이 전 세계 도처에서 피해자들 그룹들에서 벌어졌음.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은 데이터베이스를 한 군데로 통합시키키는 것이었음. 그래서 한국에서 북한의 납치역류 피해자 가족들이 분열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음. 그러나 데이터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존 체계화, 그리고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데이터베이스 설립 계획을 설득하고 만든 것이 푸프리진 데이터베이스였고 올해 1월에 론칭함.
-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니크한 프로젝트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서는 한 단체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오너십을 본인들끼리 유지하고 다른 단체와 협업을 앓는 구조임. 그러나 본 단체는 9개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했음. 컬렉티브 다큐멘테이션이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성공 사례가 되었음. 라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금 다른 나라들의 인권 그룹들 조사기록 그룹들에게 확산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음.

- 현장에서 단체들을 다큐멘터로 훈련시키고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음. 그래서 실제 전문가들을 매칭하고 목적은 미래의 이행기 정의를 위한 조사 기록화를 하는 것임. 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미 지역과 중동부 유럽과 동남아 지역도 많음. 5개국 5개 대륙에 신생 조사 기록 그룹들을 만드는 빌딩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액세스 어카운터빌리티(access accountability) 프로젝트로 전개가 되고 있음. 전에 없던 방식으로 도전을 시도했더니 실험적인 것들이 있었음. 예컨대 북한 주민들에게 이행기 정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심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음. 대학 혹은 대중교육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있는 상황임. 책임 규명이 중동이나 아시아의 특정한 나라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케이스를 영상시각화된 자료로 만드는 것도 있었음. 칠레 사례나 필리핀에서 비축한 은닉 자산들을 어떻게 환수해서 실종 피해자들에게 주는 지에 대한 내용도 있음. 과거 슈타지가 무너질 때 슈타지 문서청들을 어떻게 동독 주민들이 접거하고 문서훼손을 방지시켰는지 실제 사례들을 다큐 영상들을 만드는 작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음.
- 사회적인 관념의 변화들을 봤을 때에 과거에는 문제라고 보지 않았는데 이행기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음. 국가의 생성, 소멸과 같은 정치체제의 변화로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시민사회가 초국적인 기술협력을 했을 때 새로운 시도가 가능할 것임. 이것들이 UN에서 표준화하고 절차를 만드는 것들이 앞으로의 과제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
- 새 익그제큐티브 디렉터(Executive Director)가 됐던 페르난도차베스 대표를 불러 이야기를 들었음. 네 가지 프로젝트 중에 이행기가 안 왔는데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대상으로 탈북민들을 통해 미래의 이행기 정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평가, 용어 이해의 어려움 또는 설문지방법 개발 등을 국제적으로 첫 시도라고 말하며 다른 나라에서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함. 다른 나라들에서 민주적인 트랜지션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늦게 일어났거나 한쪽의 목적성을 가진 것들이 각축을 벌여 실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한 조사의 설문문항과 테스트가 돼 있는 세트를 만들어 놓는 작업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함. 가장 바라는 것은 실패확률을 최소화시키고 갈등을 줄이는 것임 성공보다는 실패의 확률을 줄이는 과정, 비용을 줄이는 과정, 또는 시간 낭비를 줄이는 과정이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음. 다음 세대 트레이닝과 조사기록자들을 훈련시키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음. ■



■ 담당 및 편집: 윤하은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8) hyoon@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1년 08월 19일 ISBN 979-11-6617-202-1 5 0530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 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